

데이터로 보는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

김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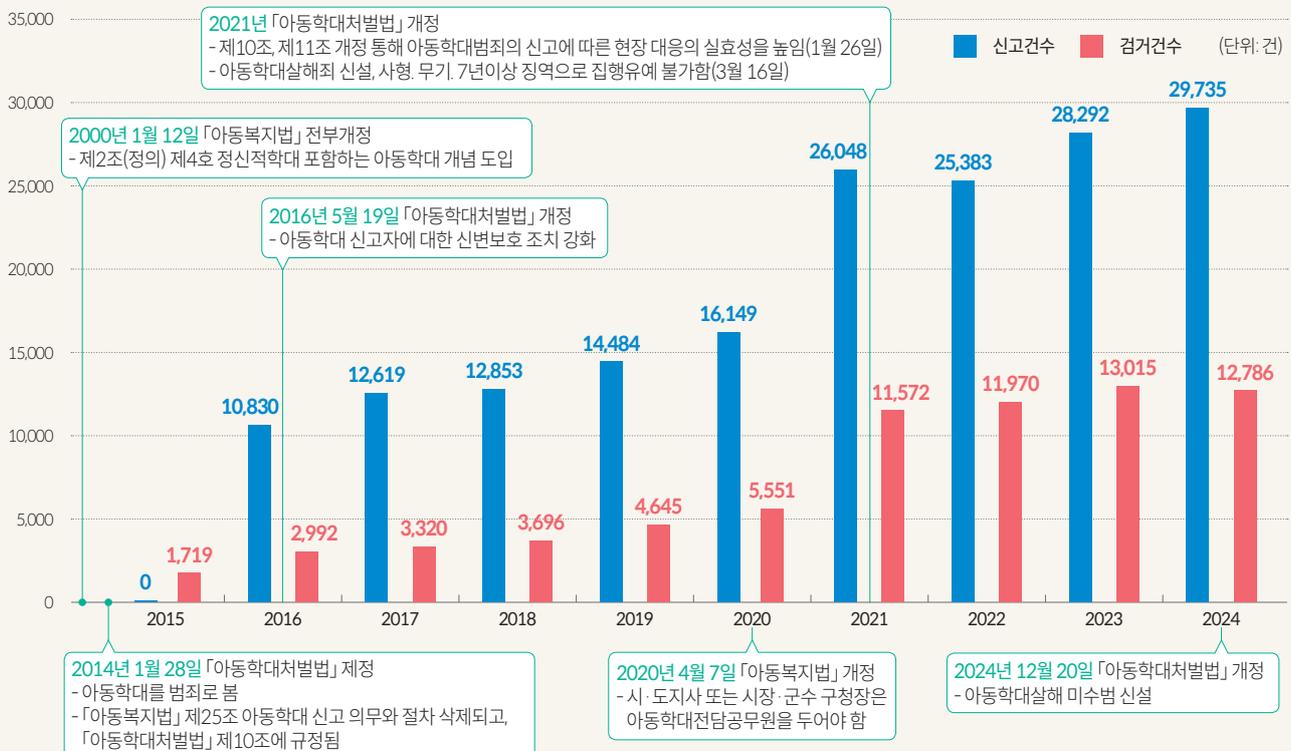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 입법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을 근거로 사회복지 및 사법 측면의 이원적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학대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아동학대 신고와 조사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입법적 대응도 소개한다.

주제어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조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아동학대는 주로 수사기관이나 지자체로의 신고 및 상담 접수를 통해 발견되고 있다. 경찰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신고건수 대비 검거 비율은 2016년 28%에서 2024년 43%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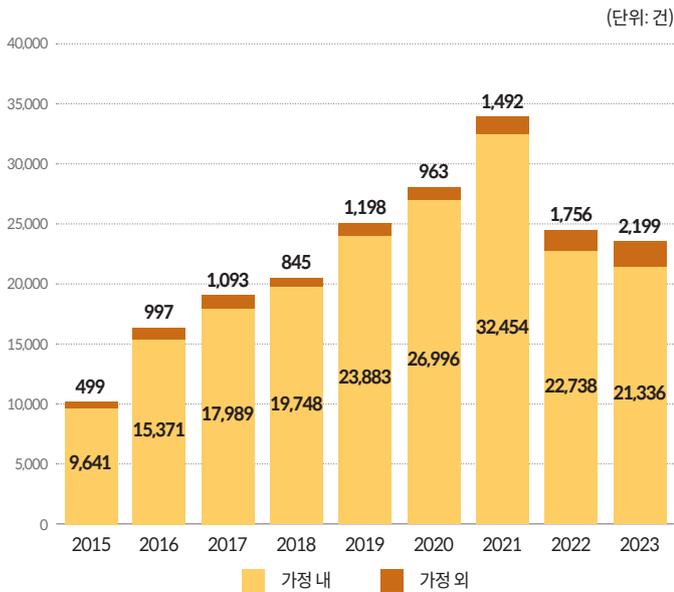
출처 : 경찰청 제출자료(2025.1)

* 아동학대는 "18세 미만인 아동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을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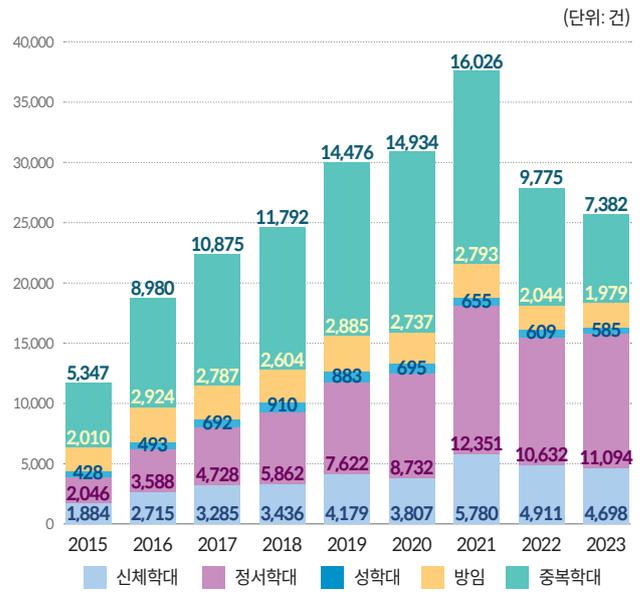
아동학대범죄의 특징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아동학대 중 약 90%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정서적 학대가 2015년 2,046건에 비해 2023년 11,094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 등 다른 아동학대 유형과 달리 그 피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어느 정도의 피해인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데,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후 아동학대를 범죄로 보기 시작하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면서 정서적 학대 관련 수치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발생장소



아동학대 행위유형 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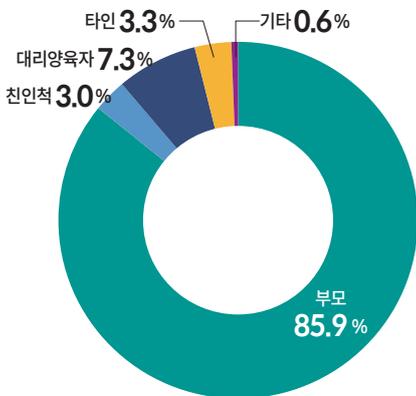


* 가정 외는 "집 근처 또는 길가, 친척집, 이웃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병원, 복지시설, 숙박업소, 종교시설" 등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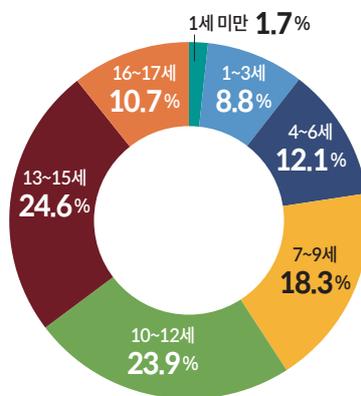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2023)

아동학대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아동의 부모인 경우가 2023년 기준 85.9%에 달한다.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피해사례가 많아져서 4~6세 피해아동(12.1%)에 비해 13~15세 피해아동(24.6%)이 두 배 이상 많다. 학대행위자 연령은 40대(40~49세)에 두드러지게 분포되어 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수는 총 337명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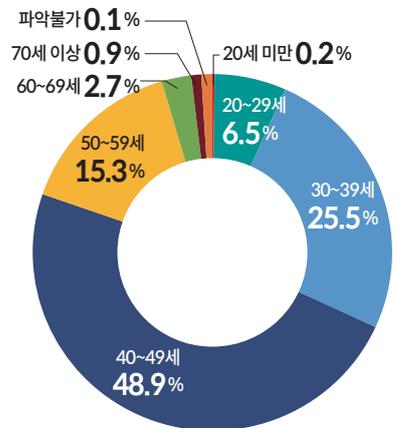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023)



피해아동 연령 (2023)



학대행위자 연령 (2023)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2023) 및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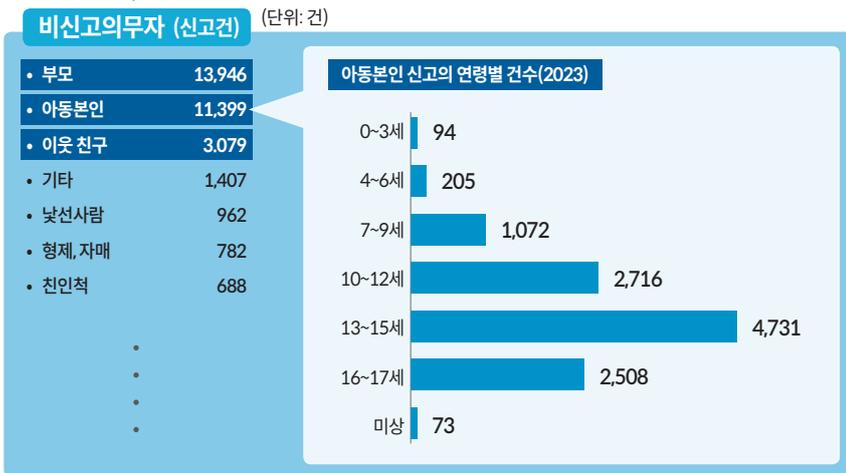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에서는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일반적 규정(제1항)과 신고의무자를 유형화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제2항)을 두고있다. 2023년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 접수된 45,771건에 대한 신고자 유형을 보면,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12,553건, 27.4%)보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33,218건, 72.6%)가 높다.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2023)

비신고의무자 **33,218건** (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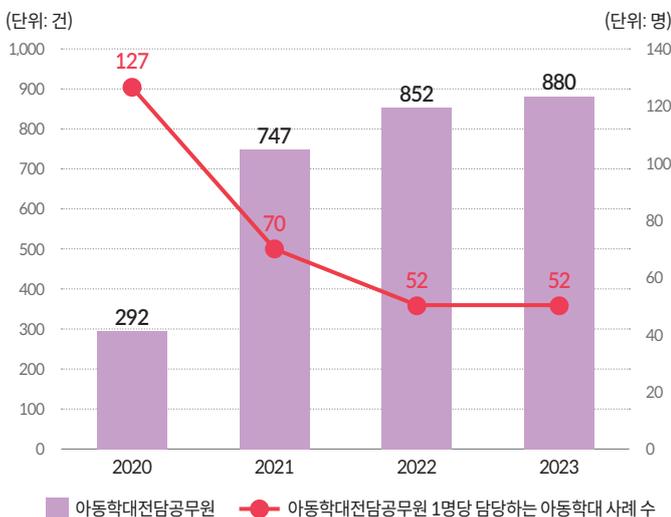
신고의무자 **12,553건** (27.4%)



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2023) 및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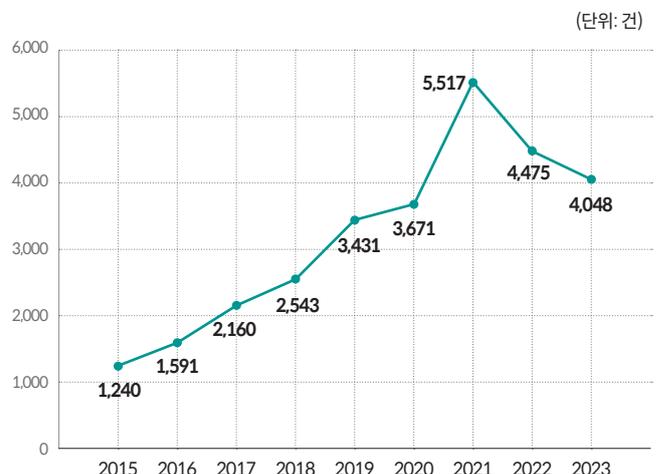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공공화

2020년 4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 전국 229개 시·군·구에 배치되었다.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사례를 조사하고, 조사 후 피해아동보호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전담공무원의 배치는 주로 경찰에서 맡아 오던 아동학대 사례 조사를 지자체로 확대하여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전담공무원 수는 2020년 292명에서 2023년 880명으로 증가하였다.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25.2.)

재학대 현황



* 재학대 현황은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재신고접수 되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를 말함.

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2023)

아동복지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18호, 2024. 2. 6., 일부개정]

제66조(조사 등)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76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26. 생략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조사)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3 생략

관련법률안 (2025년 2월 20일 기준)

| 법률안명 | 대표발의 | 주요내용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성국의원[2200194] (2024.06.07.) 백승아의원[2201443] (2024.07.05.) |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선의의 교육과 지도가 아동학대로 오해받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서적 학대행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
| | 서명옥의원[2205676] (2024.11.19.) | 대면 교육 및 확인 조사를 의무화하고 학대 행위자가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아동 재학대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 | 김예지의원[2205677] (2024.11.19.)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잦은 순환 근무로 인하여 아동학대 관련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024년 상반기 기준, 전국 17개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평균 근무 기간은 14.9개월이었음. 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문성을 갖춘 전문경력관으로 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장기 보임하면서 아동학대사례를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오경의원[2201327] (2024.07.03.) |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시·도, 시·군·구는 물론 수사기관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사법경찰관리가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만들도록 하는 것임 |
| | 서천호의원[2202337] (2024.07.29.) |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친권상실의 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 |
| | 서명옥의원[2205396] (2024.11.08.)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의 수단으로 가정방문, 전화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 | 이만희의원[2206679] (2024.12.18.) | 아동학대범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출동·조사 등 직무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Data & Law

국회도서관이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발간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문의 입법과통계서비스(<https://argos.nanet.go.kr/lawstat>), 의회법률정보포털(<https://lnp.nanet.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용문의 국내법률정보과(02-6788-4764)

발간등록번호 31-9720116-001998-14 | ISSN 2982-6241

